

<2000가단000>

증인 ■■■에 대한 반대신문사항

- 1. 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사고지점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원고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는지요?
- 2.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●●●는 원고 및 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추락사고 가 발생한 건축공사장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작업이 있는 날마다 빠짐없이 작업시작 30분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요?
- 3. 증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 날씨가 무덥다는 이유로 현장소장 인 소외 ◉◉◎의 안전교육에서 지시한 안전장비착용지시를 위반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요?
- 4. 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전에 행해진 간식시간에 원고가 현장소 장인 소외 ◉◉◉의 안전교육에서 지시한 음주금지의 지시에 위반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요?
- 5. 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원고가 현장소장인 소외 ●●●의 지시대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패널을 디디기 전에 패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요?
- 6. 기타 필요한 사항

	·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, 다음에 다른 당사 함(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).
신문방식	함(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).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	·①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
	의 순서를 따른다. 다만,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하여금 그
	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
	게 할 수 있다.
	1.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(주신문)
	2. 상대방의 신문(반대신문)
	3.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(재주신문)
	②제1항의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
	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(민사소송규칙 제89조)
기 타	• 증인의 증언내용이 주신문과 반대신문간에 있어서 전후가 상반되
	어 일관성이 없고 같은 증인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그 증
	언내용은 원고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 증언
	은 조리상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님을 추단할
	수 있어 궁극적으로 당사자인 원고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
	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
	것은 위법함(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653 판결).
	·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
	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. 따라서 증인신문조서
	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, 증언한 바
	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
	수는 없음(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86 판결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